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9. 15 선고 2020가단2219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

피 고 B교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다울

담당변호사 이호철

변 론 종 결 2021. 7. 14.

판 결 선 고 2021. 9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0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0. 7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6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

(1) 원고는 2014. 8. 12.경 C에게 금 10,300,000원을 변제기 2019. 8. 11., 약정이율 연 10.5%, 지연이율 연 19%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.

(2) 그런데 C는 2018. 12. 1.경부터 위 대출채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(3) 원고는 2019. 4. 5.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035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8. 28. ‘C는 원고에게 9,466,944원 및 그 중 9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2. 27.부터 2019. 3. 7.까지는 연 13.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9. 9. 24.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재산 처분행위

C는 2016. 10. 7.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10. 6.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: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, C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조금씩 연체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. 따라서 C의 위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바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설령,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C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4년 3개월가량 대출이자를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, 또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. 12.에야 비로소 위 대출채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,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수는 비교적 소액인 점,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성광

부동산의 표시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

1층 10.40㎡

2층 내지 5층 162.3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73.905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 389.8㎡

(대지권의 비율)

1 소유권대지권 389600분의 48725

위 표시 가져분할 부동산에 대하여 갑구 순위번호 12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6. 10. 7. 접수 제96443호로 마친 피고의 지분

-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계 소판 -

